[붙임]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

1.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3조2(학부) ① 수업연한 4년제 학과를 운영하는 학부에 한해 학사운영팀을 둘 수 있다. ② 학사운영팀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학사운영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글로벌다문화교육원운영위원회”, 주관부서의 “평생교육원”을 삭제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신 설></td><td><u>제13조의2(학부)</u> <u>① 수업연한 4년제 학과를 운영하는 학부에 한해 학사운영팀을 둘 수 있다.</u>
<u>② 학사운영팀에 직원을 둘 수 있다.</u>
<u>③ 학사운영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u></td></tr>
<tr><td>[각 위원회]
<table><tr><th>위원회</th><th>주관부서</th><th>비고</th></tr><tr><td><u>글로벌다문화교육원운영위원회</u></td><td><u>평생교육원</u></td><td></td></tr></table></td><td>[각 위원회]
<table><tr><th>위원회</th><th>주관부서</th><th>비고</th></tr><tr><td><u><삭 제></u></td><td><u><삭 제></u></td><td></td></tr></table></td></tr>
<tr><td></td><td>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td></tr>
</table>

2. 사무분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8조(학부)의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를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로 호 변경하며, “14. 인증 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설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학부) 각 학부는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 학부 특성화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3. 학부별 입시 및 취업률 지표에 관한 업무 4. 교양기초교과목 개발·수업 운영 5. (삭제20190725) 6. 학부 직업기초교과목 개발·수업 운영 7. (삭제20190725) 8. 글로벌역량교과목 개발·수업 운영 9. (삭제20190725) 10. 취·창업교과목 개발·수업 운영 11. (삭제20190725) 12. 학과장 임명 대상자 추천에 대한 업무 13. 학부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 관련 사무 **<신 설>**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28조(학부)**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14. 인증 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기금운용심의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규정 명칭인 “기금운용위원회규정”을 “기금운용심의회규정”으로 한다.
- 제1조(목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 제2조(구성)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호에서 제3호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신설한다.
- 같은조 제2항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위원은 제1항에 근거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 제4조(임무)의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 제5조(기능)의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제1항의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 같은조 제2항의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 제7조(회의록)의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4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를 “회의록 서명은 회의 당일 참석자 확인 서명으로 갈음한다.”로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1항의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 제9조(업무관리)의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 제11조(기타사항)의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금운용위원회규정	**기금운용심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 기금운용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획조정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 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조정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제1항에 근거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4조(임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금투자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기금운용계획 수립 3. 기금운용 평가 4. 기타 기금운용 관련 주요 사항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4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서명은 회의 당일 참석자 확인 서명으로 갈음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업무관리) 위원회 업무는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한다.	**제9조(업무관리)** 심의회 업무는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한다.
제11조(기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기타사항)**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교직원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5조(보수지급일)의 “22일”을 “25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2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조(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연봉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7조(지급일)의 “22일”을 “25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급일) 월봉은 급여지급일인 매월 22일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前일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일)** 월봉은 급여지급일인 매월 25일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前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원광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직원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6조(보수) 제5항의 “22일”을 “25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보수) ① ~ ④ (생략) ⑤ 급여계산기간은 월 1일 기산하여 월 말일 마감하고 월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22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보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급여계산기간은 월 1일 기산하여 월 말일 마감하고 월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후일에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사업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가. 제정내용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2022. 00. 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사업단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 이 사업단은 원광보건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광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설치한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학연협력 친화형 제도 및 산학연 공유·협업체계 구축
2.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및 신산업 기반 융·복합형 교육과정 운영
3. 현장 수요 기반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
4. 산학연 연계 친화형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5. 대학 특화분야 산학협력 브랜드 창출 및 운영
6.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운영 및 성과관리
7. 현장 애로기술 지도 및 자문
8. 산학연 연계 공동 활용장비 구축 및 운영
9. 산업체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및 활성화
10. 산학연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및 성과 창출 확산
11. 기타 본 사업 목적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구성) 사업단의 구성원은 LINC 3.0사업 참여학사 조직의 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직원 및 재학생 등으로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하며, 사업단의 사업 목적상 타 대학교수 및 외부 인사를 특별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조직) 사업단에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사업실무위원회, 산학협력중점교수단, 관·산·학클러스터협의체를 둔다.

제7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대학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대학의 교무위원급 이상으로서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과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간 내에 사업단장을 교체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사업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 사업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LINC 3.0사업 심의 및 총괄, 사업운영지침 및 세부사업 의결 그리고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⑤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체계 및 목표를 심의한다.

⑥ 사업실무위원회는 사업 수행 실무담당자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⑦ 사업실무위원회에서는 사업 수행에 관한 실무자 간 협의 및 이행점검, 개선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⑧ 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산학협력중점교수단) ① 사업단의 산학협력정책 개발과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개편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단은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성되며, 사업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 3 장 재 정

제12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할 수 없다.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 산학협력단 자체의 규정에 따라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외부지원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절차에 따른다.

제 4 장 기 타

제15조(시행세칙)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 등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사업단규정을 폐지한다.

가. 폐지내용

-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사업단규정을 폐지한다.

9. 평생교육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4조(지원 자격)의 “교육원에”를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에”로 하며,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를 “학력·연령 등의 자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 제15조(선발방법)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를 “선발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로 한다.
- 제22조(예산편성)의 “매년 12월 중”을 “대학의 본예산 편성시기에 따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원 자격)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자격)**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의 자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선발방법) 교육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선발방법)** 교육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22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예산편성)** 원장은 대학의 본예산 편성시기에 따라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원광보건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7조(하부조직)의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사업 분야별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를 “① 센터에는 원활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운영을 위해 사업관리운영팀, 특화교육운영팀, 직업교육운영팀, 지역사회공헌팀 등 사업 분야별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사업관리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HiVE사업 업무 총괄 및 관리 2. 사업비 예산 편성,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운영규정 및 지침 마련에 관한 업무 4. 거버넌스 구축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성과지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각 부서 및 각종 위원회 구성원의 의견수렴 반영 ③ 특화교육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특화분야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④ 직업교육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특화분야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 2. 일반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 3. 기타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⑤ 지역사회공헌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공헌 과제 및 타 사업 연계에 관한 업무 2. 기타 지역사회 공헌과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1항의 "이내의"를 "내외의"로 한다.
- 같은조의 기존 "제3항"을 "제2항"으로 항 이동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항 이동하며, "제5항"을 "제4항"으로 항 이동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하부조직)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사업 분야별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하부조직)** ① 센터에는 원활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운영을 위해 사업관리운영팀, 특화교육운영팀, 직업교육운영팀, 지역사회공헌팀 등 사업 분야별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사업관리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HiVE사업 업무 총괄 및 관리 2. 사업비 예산 편성,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운영규정 및 지침 마련에 관한 업무 4. 거버넌스 구축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성과지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각 부서 및 각종 위원회, 구성원의 의견수렴 반영 ③ 특화교육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특화분야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④ 직업교육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특화분야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 2. 일반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 3. 기타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⑤ 지역사회공헌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공헌 과제 및 타 사업 연계에 관한 업무 2. 기타 지역사회 공헌과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결정 2. 센터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현행과 같음) ①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